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서울시보

기관 의 장	
선	
람	

제 1979 호 1996. 6. 25.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훈 령
 - 제 839호 서울특별시회의주최간은영구정중재정규정 3
 - 제 840호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 3
- 고 시
 - 제 1996-161호 도시계획사업(서강대교북단~신촌로터리간도로)실시
계획변경인가 14
 - 제 1996-162호 도시계획사업(경동길~술샘길간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5
 - 제 1996-163호 도시계획사업(자봉길확장공사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6
 - 제 1996-166호 유역방고물동의안전도전사업우위탁해지 18
- 공 고
 - 제 1996-213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18
 - 제 1996-214호 다단계판매업자폐업 19
 - 제 1996-216호 시의회부의안전 19
- 구 고 시
 - 제 1996-3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성동) 19
 - 제 1996-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승인정정(성동) 20

(이면계속)

영																				
람																				

제 1996- 4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결정승인(영등포)	22
제 1996- 48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지정승인(영등포)	22
제 1996- 36호	도시계획사업(합복근린공원인근스포츠센터)실시계획인가(도봉)	23
제 1996- 4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영등포)	24
제 1996- 23호	도시계획사업(상도3동283, 286주변도로)실시계획인가	25
제 1996- 26호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지적고시(관악)	26
제 1996- 2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관악)	27
제 1996- 30호	도시계획시설(하천)실효고시(서초)	27

● 구 공 고

제 1996-102호	도시계획(안)공람(금천)	28
제 1996-128호	건설업면허양도인가(영등포)	28
제 1996-129호	전문건설업면허양도인가(관악)	29
제 1996-16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29
제 1996-173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강남)	30
제 1996-17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31
제 1996-133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31
제 1996-134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31
제 1996-13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32

● 사업소고시

제 1996- 64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한강관리사업소)	32
제 1996- 65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한강관리사업소)	32
제 1996- 66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33

● 사업소공고

제 1996- 9호	도시공원시설(석당휴게소)관리위탁(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33
------------	-------------------------------	----

● 교육청공고

제 1996- 68호	1996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공고	34
-------------	------------------------------------	----

● 공문시행

물품관리전환수요조치(강동수도사업소, 은평구, 마포구)	37
-------------------------------	----

● 인사발령

훈 령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 6. 25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㉞

●서울특별시훈령제839호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운영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공무국의여행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공무원국의혼련심의회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일시귀국 및 주재국 이외의 여행"을 "일시귀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머리 주재공관의 장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 선발시 단기간의 해외출장을 심의하는 공무국의여행심사위원회보다는 장기 해외혼련자를 선발하는 공무원 국의혼련심의회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해외주재관의 일시귀국시 주재공관의 장의 승인과 결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실성을 높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재관 선발시 "서울특별시공무국

외역행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을 "서울특별시공무원국의혼련심의회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제6조).

나. 주재관의 일시 귀국시 또는 그 동반가족의 일시귀국시 머리 주재공관의 장을 거쳐 시장의 승인만 득하도록 함(제15조).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 6. 25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㉞

●서울특별시훈령제840호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직관 후생시설(이하 "후생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후생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청내 구내식당, 연금매점 및 기타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후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운영자금) 후생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은 운영실적에 의한 잉여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상임위원은 총무과 서무계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계장 및 각국 서무담당 중(기능직 1명, 여직원 1명 이상 포함)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시설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후생시설의 예산, 결산 및 수익을 결정에 관한 사항
3.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후생시설운영규정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후생시설에 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예산, 결산)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6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의 재결로 효력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① 운영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매점운영책임관이 된다.

② 간사는 총무과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감사)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중에서 1인을 감사로 지정할 수 있고, 감사는 필요한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후생시설 운영에 관한 재반사항을 감시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후생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권한의 일부를 상임위원, 간사 및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결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조직 및 인사관리

제10조(조직) ① 후생시설 업무집행은 위원장, 상임위원, 간사 및 그 소속직원이 행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후생시설 운영에 관한 재반업무를 관장한다. 단, 위원장 유고시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후생시설 운영을 위하여 종사원을 둔다.

⑥ 후생시설 중 서울특별시 매점에서는 상품공급회사로부터 관속사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종사원의 임면) ① 종사원의 임면은 위원장이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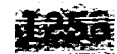
② 종사원의 직종별 채용자격,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종사원의 면직)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사원을 면직할 수 있다.

1. 종사자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자체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의한 경우
3. 후생시설 운영상 종사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종사원의 징계) ① 위원장은 종사자가 근무에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 등 기타 후생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반하는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자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자체 징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평생시설징계위원회"라 칭한다.

4 제1항의 자체징계의 양정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예관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복 무

제14조(근무시간) 1 후생시설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생시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일부 종사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출근) 1 종사원은 근무시작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경우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당일 정오 이내에 지참신고해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당직근무) 1 위원장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종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출장) 1 종사원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2 종사원은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결과보고하여야 하며, 가벼운 사항은 구술로 결과보고할 수 있다.

3 출장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간외근무 및 초휴일근무) 위원장은 사무과태상 전담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공유일의 근

무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일에 근무를 명할 경우 위원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 공무원수당지급 기준에 역거 시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근무복지급) 1 위원장은 후생시설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종사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착용시킬 수 있다.

2 근무복을 지급받은 종사원은 일과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0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연가일수) 1 종사원의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준용한다.

2 위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기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특별휴가 등)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의 적용기준과 본 규정에 언급이 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한다.

제5장 임 금

제23조(임금의 종류) 종사원의 임금은 봉급, 계수당 및 퇴직금으로 한다.

제24조(임금의 지급기준) 종사원의 임금은 별도지급기준이 없을 경우 지방공무원 기능직10등급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인상을 등을 참고하여 운영위원회의서 결정한다.

제25조(퇴직금) 1 종사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근로기

준법에 준한다.

③ 위원장은 재직 중인 종사원의 퇴직금 여충당금을 연 1회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영 업

제 26 조 (운영시간) 후생시설별 운영시간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27 조 (이용대상) ① 후생시설 이용대상은 공무원과 그 가족 및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이용대상 신분확인인 공무원 중, 은행 신용카드, 의료보험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후생시설의 종류에 따라 외래 방문객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 28 조 (판매가격) 매점 판매가격은 관련 회사와 상호협의를 하되 아래 기준에 의거 결정한다.

1. 시중가격보다 저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 기관 후생시설 판매가와 같거나 저렴해야 한다.

2. 상품 판매가격의 결정은 장기계속계약시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수시조정 필요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 또는 간사가 결정한다.

제 29 조 (상품구매계약) 매점에서 판매할 상품의 선정 및 구매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장기계속계약을 요하는 상품의 공급업자 선정 및 상품종류는 위원장이 정한다.

2. 장기공급이 불필요한 계절상품 등을 수시구매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구매계약시 상품 공급가격은 공장도가격(부가세포함) 내지 그 이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장도가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품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

4. 구매계약 체결시에는 공급업자로 하여금 공장도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장도가격 적용이 곤란한 경우 시장조사방법 등에 의하여 공급제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7 장 예산 및 회계

제 30 조 (회계원칙) ① 후생시설은 그 수입으로써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후생시설의 계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정규부식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③ 후생시설의 회계연도는 서울특별시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④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사실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 31 조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인 임직원 중에서 출납명령관, 출납원과 동반출납원을 임명하여 회계관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한다.

② 출납명령관은 상임위원이 되고, 출납원은 간사, 본일출납원은 후생시설별 운영담당인이 되며, 회계관계직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32 조 (예산서의 작성) ①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한다.

② 예산서는 제 27 조의 규정과 의한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 33 조 (예산의 성립) 후생시설의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와 위원장의 재결로 확정한다.

산 조각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리에 있어서는 그 사유 및 산출내역이 기재된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가용할 수 있다.

제44조(금전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은행구좌 입금액 의하여 수취인별로 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은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

제45조(금전의 보관) ① 모든 수입금은 당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금액을 소액현금으로 현금보관시킬 수 있다.

제46조(지출인행위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인행위 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가용할 수 있다.

② 비용예산 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지출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인건비, 여비, 제세공과금, 특수활동비
2. 정례적인 확정경비
3. 법령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4.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판매를 위한 재료 또는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5. 10만원 미만의 판매를 위한 재료 또는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제47조(계약의 집행) 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국가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8조(수의계약의 범위) 위원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

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매각 또는 매입하는 경우
2. 예정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를 하겠다는 경우
3. 관공서, 정부투자기관(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정부출연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5. 당해물품의 제조자가 단일인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의 제조 또는 매입으로 사업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6. 후생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제조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7.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에 부침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9조(장기계속계약)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 또는 상품의 가격안정과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은 단가 또는 금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량 또는 기간만 계약할 수 있다.

③ 장기계속계약 체결시에는 다음 서류를 계약업자로부터 징구한다.

-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나. 신용인증서
- 다. 인감증명서
-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마. 기타 필요한 서류

제 8 장 결 산

제50조(결산의 종류) 결산은 정기별 가결산과 연말결산으로 한다.

제51조(결산의 지칭) 간사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분기 인월 15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익계산서
2. 대차대조표(별표 5 참조)
3. 합계잔액 시산표
4. 미정산 내역표
5. 예산집행 실적보고서

제 9 장 물품관리 및 거래

제52조(물품의 종류) ① 후생시설 물품은 별표 6의 분류기준에 따라 집기, 소도품 재료 및 상품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집기는 품종별로 소정의 집기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도 정리한다.

③ 상품은 소정의 판매품원장카드에 금액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판매보고에 따라 정리한다.

제53조(재물조사 및 재고조사) 상품 및 집기에 대하여는 정기재물조사 및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재물조사 및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부족품의 처리) ① 재물조사 또는 재고조사의 결과 부족품이 발견될 때에는 판매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물조사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손망실처리하되 연간 손망실처리 총금액이 총이익금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5조(불용품의 처리) 후생시설 집기 중 폐품 또는 불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정리한다. 매각이 곤란하거

나 되는 매각할 가치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와 정리할 수 있다.

제56조(불량품의 처리) 모범의로 판정한 물품이 불량품인 경우에는 그 하자회복 책임이 매입자에게 있지 않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체에서 이를 교환 또는 환불을 주도부 조치하여야 한다.

제57조(매장관리) ① 매점과 계약에 의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위원장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 부득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훈령 제507호 서울특별시매점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과명		의업관리팀장인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매점	인사	1	후생시설종사자 부두관리	○				
		2	종사원 및 회계직 임명				○	
		3	종사원 자체교육	○				
		4	종사원 근무배치				○	
		5	직인 근무상황 관리	○				
		6	시간외 휴일근무 명령				○	
		7	직권 경력증명 발급					
		8	종사원 표창 및 포상				○	
		9	시내 출장명령				○	
		10	시의 출장명령				○	
		11	장표류 및 서식 결정				○	
영업		1	매입·매출(GP 포함) 집계	○				
		2	일계표 작성	○				
		3	과오납 및 과오지급 정정			○		
		4	상환대금 지급결의				○	
		5	공공요금 지불			○		
		6	관대(이용)가 결정				○	
		7	관대(이용)가의 수시 조정				○	
		8	매점 장기상품 공급계약				○	
		9	재고과약 계획 및 실기			○		
영업		10	계약된 상품청구 및 반송	○				
		11	시장조사 실시	○				
		12	일시관매할 상품의 계약제결				○	
		13	후생시설 보완 업무감독			○		
		14	예산 및 결산				○	
회계		1	지출(50만원 이상)				○	
			지출(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지출(30만원 미만)			○		
		2	불용종처리(50만원 이상)					○
			불용종처리(50만원 미만)					○
		3	예비비 지출 및 사용조사 승인					○

종사원 채용자격 및 정원							
구분	종	인원	임금기준	기	요	기	준
필수	수납원	5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지방기능직 10등급에 준한다.	부기, 타자, 워드 3급 이상 자격증 중 1개를 소지한 자			
	간담원	5					
	창고관리 및 상품 운반 반원	1					신체 건강하고, 적산능력이 있는 자
선정	자비원	1					당첨 또는 유사직종에 3년 이상 경력자
선정	보통사	1					연말사과보증을 소지한 자
	조리장	1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보통사	1					보통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조리원	13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집객원	9					
	수납원	3					부기, 워드, 타자 3급 이상 자격증 중 1개를 소지한 자
	위생원	1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신규채용하는 종사원의 연령은 40세 이하로 한다.

※ 채용 구비서류

가. 이력서 1통

바. 신원보증서 1통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 재정보증서 1통(소정양식). 다만, 보증

다.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1통

보험 3,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경우에는

라. 주민등록등본 1통

생략

마. 신원증명서 1통

<별표 3>

회계관계직원의 직무범위

직 위	직 명	직 무 범 위
출납명령관	상임위원	○예정금액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공사 및 제조, 가공, 용역 ○예정금액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 운송 기타
출납원	간 사	○예정금액 30만원 미만의 공사 및 제조, 가공, 용역 ○예정금액 3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료, 운송 기타 ○입금, 수당, 휴가비, 급량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운영 금액에 따른 의무적 경비

●강남구공고제1995-17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

연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6. 6. 25
강남구청장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1996 6.19	토공사업 83-서울-02-521 포장공사업 농부 16-12	호림건설 산업(주)	강남구 논현동 127	정말준	범주건설 (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1동 1204-13	김주인

●승파구공고제1996-133호
전문건설업상속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
설업면허를 상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6. 6. 25

승파구청장

가. 상속인가월일: 1996년 6월 13일
나.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번호: 89-서울-10-34)
포장공사업
(면허번호: 89-서울-16-06)

다. 피상속인, 상속인의 주소와 주된 영
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설명:

○피상속인

- 상호: 충남기업
- 소재지: 서울특별시 승파구 오금
동-10-3
- 대표자: 조정화
- 대표자주민등록주소: 서울시 오금
동 92-11 나정 101호

○상속인

- 상호: 충남기업
- 소재지: 서울특별시 승파구 오금
동-10-3
- 대표자: 조정화
- 대표자주민등록주소: 서울시 승파
구 오금동 165 상아 6-1007

●승파구공고제1996-134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
설업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6. 6. 25

승파구청장

가. 양도인가월일: 1996년 6월 13일
나.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번호: 95-서울-10-59)
상속인도량측량업
(면허번호: 서울-13-2)
다.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

구분		내역	비고
1. 자산	3. 이연자산	1. 개관비	
2. 부채	1. 우등부채	1. 최상대입금 2. 선수금 3. 예수금 4. 특수보증금	5. 미지급비용 6. 가수금 7. 미지급금 8. 선수수익
	2. 고정부채	1. 차입금	
3. 자산	1. 자본금 2. 이익잉여금	1. 자본금 1. 이익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별표 6) 물품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집기	직접관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1회 사용으로 재사용이 불가능 또는 사용가치가 소멸되거나, 현저히 감모되지 않는 것으로 내용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물품 중 소모품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소모품	직접관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가치가 소멸되는 물품 2. 내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감모되는 물품 3. 유리, 플라스틱, 도자기, 칠그릇, 섬유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품으로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 4. 내용기간이 1년 이상 되더라도 단가가 1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관리상 유실우려가 많은 품목(예: 수저, 찬그릇 등) 5.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 제작, 생산하거나 시설보수공사 등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등)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성격의 물품		
상품	관리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가증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 관리하는 물품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p>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직원 후생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매점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구내매점, 구내식당, 구내이발소를 통합한 직원 후생시설운영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p> <p>2. 주요골자 가. 후생시설의 통합관리(제1장)</p>		<p>—연금매점,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나. 후생사업운영위원회 구성(제2장)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10명 다. 후생사업의 조직, 인사관리의 근거 기준 정함(제3~5장). —복무지침, 채용, 징계기준 마련 라. 후생시설의 영업, 예산, 결산의 근거 기준 정함(제6~9장). 마. 후생시설 운영전체 규정 정함(제9조).</p>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6-16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40호(95. 8.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된 서강대로(서강대교 부단~신촌로터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토목 1부), 마포구청(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6. 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변동없음) : 마포구 신정동(서강대교 부단)~노고산동

(신촌로터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강대로(서강대교 부단~신촌로터리) 건설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도로 폭 40m, 연장 1,500m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인가일로부터 1998. 12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전용소채지, 지면·지목 및 소유권 이득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따로붙임.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변경)토지조서

사업명 : 서강대로(서강대교 부단~신촌로터리) 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76	당초 황전동 187-25	대	53.0	53.0	이윤자 마포구 황전동 187-2 (가압류 대한보증보험(주) 강남구 삼성동 141)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변경	.	.	.	이윤자 마포구 황전동 187-2 가압류 채권자: 대한보증보험(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 (남부 보상사무소)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취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76 변경	상전동 187-2	대	53.0	53.0	권리자: 대한보증보험(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 권리자: 신한리스(주) 안산시 고잔동 526-3(서울지점) "근저당 설정" 채무자: 이천길 서울 양천구 목동 727-16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영등포지점) 연대채무자: 이상남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42-18 연대채무자: 이자성 서울 마포구 창전동 187-2 근저당권자: (주)통국상호신용금고 서울 중구 무교동 32-2 채무자: 이글산업주식회사 경기도 김포군 김단면 마전리 641 근저당권자: (주)통국상호신용금고 서울 중구 무교동 32-2	

* 상기 외에는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4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와 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1996-16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43호(94. 7. 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02호(95. 11. 15)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경동길-술샘길간 도로개설공사(4차)"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6. 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성북구 경동동 290-54~239-97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도시계획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경동길-술샘길간 도로개설공사(4차)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도로 폭 20m, 연장 410m

라.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
 1) 기정 : 인가일로부터 95. 12. 31
 2) 변경 : 인가일로부터 96.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따로붙임.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추가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시 번	지목	지적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계인
				성 명	주 소	
1	정릉동 252-184	대	27	고봉규	정릉동 252-125	
2	252-195	대	2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6-16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43호(95. 12. 11) 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된 "지봉길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공정관리부), 성북구청(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6. 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종로구 승인동 83-7-승인동 5-8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 지봉길확장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도로 폭 25m~45m, 연장 1,220m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 인가일 - 9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따로붙임.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변경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지상보상) 소재지: 성북구 보문동								
연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7	2가 206-1	대	82.0	82.0	대	노희정 성북구 보문동3가 206-1 (압류 성북구청) 정은진 성북구 보문동3가 206-1		
변경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지상보상) 소재지: 성북구 보문동								
연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변경사유
						성명	주소	
7	3가 206-1	대	82.0	82.0	대	노희덕 성북구 보문동3가 206-1 (압류 성북구청) 정은진 성북구 보문동3가 206-1	소재지 지번, 소유자 성명 결정	
※ 기타 인가내용 변동없음.								
변경전 물건조서 소재지: 성북구 보문동								
연번	소재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유자		변경 사유	
					성명	주소		
20	3가 216-6	옥탑 3층 2층 1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31.7 77.6 77.6 77.6 22.14	노영석 성북구 보문동3가 216-2 (근저당권 성북구 보문동4가 10 보문동 새마을금고)			
22	3가 206-1	1층	목조기와 연외조	53.5	노희정, 정은진 성북구 보문동3가 206-1			

변경후 물건조사

소재지 : 성북구 보문동

연번	소재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년적 (㎡)	소유자		변경 사유
					성명	주소	
20	3가 216-6	옥탑 3층 2층 1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 트 슬래브	31.7 77.6 77.6 77.6 22.14	노영석	성북구 보문동3가 216-6 (근저당권 성북구 보문동4가 10 보문동 새마을금고)	소유자 주소정 정
22	3가 206-1	1층	목조기와연 와조	53.5	노희덕·정은진	성북구 보문동3가 206-1	소유자 성명정 정

* 기타 인가내용 변동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1996-166호

옥외광고물등의안전도검사업무
위탁해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해지하였기에 서울특별시옥외광

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이를 고시합니다.

1996. 6. 25

서울특별시장

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위
탁 해지

(1) 해지업무명 : 옥외광고물 등의 안
전도 검사

(2) 해지일자 : 1996년 6월 29일

(3) 수탁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연번	검사지역	대표자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96-6	용산구	김정기	용일건축사 사무소	용산구 원효1가 129-22	712-7647



●서울특별시공고제1996-213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
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6. 25

서울특별시장

1. 상호 : (주)노이폴하우스
2. 대표자 : 강귀희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7-13

변 경 전	변 경 후
부산지점 소재지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3-1 한성생명빌딩 7층	- 부산지점 소재지 부산시 동구 수정동 3 한성생명빌딩 18층
4. 변경일자: 96. 6. 13 5. 변경사유: 지점의 확장 이전	2.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3-11 3. 대표자: 정영애 4. 폐업일자: 96년 6월 18일 5. 폐업사유: 경영부실
●서울특별시공고제1996-214호 다단계판매업자택업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폐업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6. 25 서울특별시장 1. 상호: (주)젊은사람들	●서울특별시공고제1996-216호 시의회부의안전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 부의할 안전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6. 25 서울특별시장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의견청취안(7건)	1. 무악상세계획구역지정 (중로구 무악동 46 일대) 2.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노원구 상계15단지~수락산역) 3.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 결정 (강남구 압구정동 617 일대) 4. 상봉상세계획구역지정 (중랑구 상봉동 129 일대) 5. 수색지구상세계획구역지정 (은평구 수색동 122 일대) 6. 옥동상세계획구역지정 (중랑구 옥동 170 일대) 7. 망우상세계획구역지정 (중랑구 상봉동 81 일대)	도시계획과

구 고 시

●성동구고시제1996-3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6. 25
성 동 구 청 장

○ 고시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사 업 명	민영주택건설사업	과 동	없 음
사 업 주 체	성일연립재건축조합	과 동	.
사 업 위 치	성수1가 13-451 외 10필지	성수1가 13-451 외 10필지	.
대 지 면 적	11,383.97㎡	11,383.97㎡	.
건 축 면 적	3,127.839㎡	3,127.839㎡	.
연 면 적	45,488.0388㎡	45,411.8388㎡	감 76.2㎡
건 례 율	27.47%	27.47%	없 음
용 적 륜	277.90%	277.90%	.
세 대 수	331세대	331세대	.
사업시행기간	1995. 5 ~ 1998. 8	1995. 5 ~ 1998. 8	.
사 업 비	46,173,000천원	46,173,000천원	.

●성동구고시제1996-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승인
점정고시

1. 성동구고시 제1996-8호(96. 2. 23), 제1996-13호(96. 3. 16), 제1996-18호(96. 4. 9), 제1996-24호(96. 4. 23)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 5호 서울특별시행정전환위임규칙 제3조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경정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정비

국 도시정비과(290-7385~8) 및 제무국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6. 25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변경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전	종 점	기능	사용형태	비 고
기정	소로	2	-	8	110	성동구 행당동 142-5	성동구 행당동 295	-	일반도로	결정도면 변경없이 기능보완
변경	소로	2	-	8	110	행당동 142-5	행당동 295	국지 도로	.	
기정	중로	3	-	12	250	행당동 318-26	행당동 144-24	-	일반도로	.
변경	중로	3	-	12	250	행당동 318-26	행당동 144-24	국지 도로	.	
기정	소로	2	-	8	780	마장동 816-51	행당동 158-17	-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	8	780	마장동 816-51	행당동 158-17	국지 도로	.	
기정	소로	2	-	8	432	하왕십리 946-18	하왕십리 995-1	-	일반도로 킷 보행자 전용도로	.
변경	소로	2	-	8	35	하왕십리 903-4	하왕십리 946-66	(계단 도로) 복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2	-	8	397	하왕십리 946-32	하왕십리 995-1	국지 도로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3	30~ 36.3	6,500	중랑구 면목동 (중2-74)	성동구 성수동 (대1-15)	-	일반도로	.
변경	대로	2	23	30~ 36.3	6,500	중랑구 면목동 (중2-74)	성동구 성수동 (대1-15)	주간 선도 로	.	
기정	소로	3	-	6~ 10	74	성동구 옥수동 228-4	성동구 옥수동 (225-9)	-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	6~ 10	74	성동구 옥수동 228-4	성동구 옥수동 (225-9)	국지 도로	.	

다. 지적도면 : 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당초 고시도면과 같음-도면생략).

● 동대문구고시제1996-4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2-36호(92. 12. 30)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106 외 31필지상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업위치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33조4항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6. 25

동대문구청장

가.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나. 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

- (1) 농협직장주택조합 외 4개조합
- 중구 충정로1가 75 (대표 박석봉)
- (2) (주)우성건설
- 서초구 서초동 1586-7 공동보전관리인 이수신 외 1인

다. 사업시행내역

- (1) 위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106 외 31필지
- (2) 대지면적 : 17,414.81㎡
- (3) 사업규모 : 아파트 7~18층 5동 496세대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구분	등급	유별	폭원 (m)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결정	소로	3	4	국지 도로	90	답십리동 산 2-106	답십리동 산 2-106	일반도로	신설
결정	소로	3	6	국지 도로	47	답십리동 산 2-106	답십리동 산 2-106	일반도로	신설

(5) 고시도면 : 동대문구청 주택개발과 준비반에 비치도면과 같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동대문구청 주택개발과 준비반에 비치된 조서와 같음.

3)로 결정고시된 우리 구 관내 전농동 295 일대 전농지구중심 외 3개소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동대문구고시제1996-48호

도시계획용도지역및용도지구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49호(96. 6.

1996. 6. 25

동대문구청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적승인 조서						
연번	의 칭	용도지역 변경내용 및 면적		용도지구 및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면적(㎡)			
1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 일대	일반상업지 역	일반주거지 역	59,700	-	청량리 미주 아파트
2	동대문구 제기동 892-68 일대	일반상업지 역	일반주거지 역	15,900	-	제기동 미도 파백화점 뒤 및 정통천 부 지 일부
3	동대문구 284 일대	장안동 일반상업지 역	유동상업지 역	20,586	-	동부화물자동차 터미널
4	동대문구 265 일대	전농동 일반주거지 역	근린상업지 역	59,000	도시설계지 구	전농지구 중 삼
			준주거지역	2,700	61,700㎡	

나. 도면: 생략(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능 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 6. 25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 동 산 15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
- 명칭: 월계근린공원조성(스포츠펀터)

다. 사업의 내용

- 면적: 17,851㎡ 중 부지면적: 7,780㎡, 시설면적: 6,238㎡
- 사업규모: 실내수영장 1동(지하 1층 ~ 지상 3층) 및 산책로 조성
- 지하 1층: 물리장, 휴게실, 창고, 기계실
- 지상 1층: 수영장, 수영장 부대시설
- 지상 2층: 일반음식점, 종합체육관
- 지상 3층: 체력단련장, 관리사무실 등

●도봉구고시제1996-36호

도시계획사업(월계근린공원내스포츠펀터)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8호(93. 2. 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되고 도봉구 고시 제1993-12호(93. 2. 25)로 지적승인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9호(96. 4. 4)로 변경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1996-17호(96. 4. 15)로 지적승 인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 1996-123호(96. 5. 28)로 공람공고된 월 계근린공원내 도봉구 창동 산 157에 대하 여 도시계획법 제23조제5항에 의거 시행 자 적정하고 도적공인법 제6조제1항과 도 시계획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면 적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7,780	5,140			1,788.87	4,987.48	
운동 시설	소계			7,780	5,140		1동	1,788.87	4,987.48	
	스포츠 센터	5	창동 산 157	7,780	5,140	R.C	1동	1,788.87	4,987.48	지하1 지상3
- 도로조서(산책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복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 점	종 점	
계					546	1,098				
신설	산책로	4	22	1.2	510	612	산책로	창동 산 157	중 2-78	
·	·	4	23	1.2	36	43	·	창동 산 157	산 4-22	
·	·	4	24	1.2	369	443	·	창동 산 157	산 159	
<p>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96. 6. 인가일로부터 97. 12. 31까지</p> <p>마. 시행자 주소·성명</p>							<p>- 주소 : 막산시 합포구 산호동 160-27 태림종합건설주식회사</p> <p>- 성명 : 강득훈</p>			
<p>바. 사용 도는 수용할 토지조서</p>										
소 계 지		지목	지적 (㎡)	사용도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 소				
계		1필지	17,851	17,851						
도봉구 창동 산 157		임야	17,851	17,851	최재경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32-37					
<p>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p> <p>- 주소 : 막산시 합포구 산호동 160-27, 태림종합건설주식회사</p> <p>- 성명 : 강득훈</p>					<p>◎영등포구고시제1996-47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p> <p>건설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1996. 6. 25</p>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대립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김종욱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886-1)
 - (주)한신공영 대표이사 황춘기(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5- 62)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건립규모
 -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886-1
 - 나. 대지면적 : 총대지면적 4,864㎡ 중 사업부지 4,717.62㎡, 기부채납면적 146.38㎡
 - 다. 건축연면적 : 21,008.16㎡
 - 라. 규모 : 지하 3층 지상 9~18층 아파트 1동 143세대 및 부대편리시설
 - 마. 사업시행기간 : 96. 5 ~ 98. 8

●동작구고시제1996-23호

도시계획사업(일반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1996-81호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상도 3동 283, 286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일반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6. 25

동 작 구 청 장

1. 인가내용
 - 가. 사업시행지 : 동작구 상도동 산 80-29 ~ 상도동 산 80-32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일반도로)
 - 명칭 : 상도 3동 283, 286 주변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6~8m, L=100m
 - 라.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성명 : 동작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3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2.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와 건설 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물 건 조 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용 자	
						성 명	주 소
1.	상도동 산 80-29	수목	소나무	50	임야	이윤익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④ 102-1003	
						나동철 강남구 압구정동 산 61 한양④ 11-1201	
						주동철 강남구 개포동 806 우성3차④ 6-602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주소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1	상도동 산 80-30	수목	소나무	33	임야	이운익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공 102-1103
						나종필	강남구 압구정동 산 6-1 한양④ 11-1201
						주동열	강남구 개포동 800 우성3차공 6-602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1	상도3동 산 80-29	임	131	131×1/3	임야 및 도로	이운익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공 102-1103
				131×1/3		나종필	강남구 압구정동 산 6-1 한양④ 11-1201
				131×1/3		주동열	강남구 개포동 800 우성3차공 6-602
2	상도3동 산 80-30	임	57	57×1/3	임야 및 도로	이운익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공 102-1103
				57×1/3		나종필	강남구 압구정동 산 6-1 한양공 11-1201
				57×1/3		주동열	강남구 개포동 800 우성3차공 6-602
3	상도3동 산 80-32	임	516	516	임야 및 도로	제무부	

●관악구고시제1996-26호

도시계획응도지역·지구지적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38호(96. 5. 28)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 응도지역·응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들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과와 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6. 25
관악구청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조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관악구 봉천동 464. 502 일대		일반주거지역 중주거지역	12.170	은천생활권중심
나.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적승인 조서				
위 치	지 구 명	위 치	면적 (㎡)	비 고
신 일	도시설계지구	관악구 봉천동 464. 502 일대	12.170	은천생활권중심
<p>다. 관계도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과와 지적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은 도면생략.</p> <p>6. 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8조, 제15조, 수도법 제12조, 측량법 제25조, 하수도법 제13조, 도시계획법 제12조, 도로법 제34조</p>				
<p>●관악구고시제1996-27호</p> <p>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p> <p>우리 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6. 25 관 악 구 청 장</p> <p>1. 사업명: 새한연립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p> <p>2. 사업주체: 새한연립재건축 조합장 강남용</p> <p>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p> <p>가. 위치: 관악구 봉천동 1629-2, 3, 11, 12, 13호</p> <p>나. 대지면적: 3,120.50㎡</p> <p>다. 연 면 적: 20,061.53㎡</p> <p>라. 규모: 지하 3층, 지상 16층 1개동121세대 및 부대편리시설</p> <p>4. 사업기간: 1996. 7. ~ 1998. 7.</p> <p>5. 기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예술장식</p>				
<p>●서초구고시제1996-30호</p> <p>도시계획시설(하천)실효고시</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486호(79. 11. 23)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하천(여의천) 총 길이 4,500m 중 2,800m는 지적승인 기간이 지나 도시계획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효되었기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6. 25 서 초 구 청 장</p> <p>가. 도시계획시설(하천) 실효고시 조서</p> <p>사실명: 하천(여의천)</p> <p>위 치: 신원동 137~염곡동 287간</p> <p>규모: B=10~60m, L=2,800m</p>				

나. 권역도시 : 영광 시초구청 도시장비
과 비치도면과 같음.

구 공 고

●**금천구공고제1996-102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법 제113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
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6항의 규정

에 따라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
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에는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금천구청
도시장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6. 6. 25

금 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장비과(890-2335-7)

다. 관련도시 : 공람장소 비치도시와 같
음.

라. 공람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연번	구분	시설명	등급	유별	폭원 (m)	연장 (m)	시 점	종 점	비 고
1	기정	도로	소로	3	6	264	시흥동 77-3	시흥동 405-2	연장축소 (149m)
	변경	·	·	3	6	115	시흥동 704-12	시흥동 405-5	
2	기정	·	·	3	6	62	시흥동 412-23	시흥동 산 79	폐지 (62m)
	변경	·	·	·	0	0			
3	기정	·	소로	3	6	446	시흥동 77-3	시흥동 704	연장축소 (357m)
	변경	·	·	3	6	89	시흥동 411-5	시흥동 704-37	
4	결정	·	·	1	10	550	시흥동 산 83-37	시흥동 424-9	신설
5	결정	·	·	3	4	90	시흥동 930-69	시흥동 930-12	신설

●**영등포구공고제1996-128호**
건설업면허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를 하고 동법시행
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6. 6. 25

영 등 포 구 청 장

양도인가일	1996. 6. 14		
업종 및 면허	토공 94-서울-02-107		
인가관	영등포구청장		
구분	양도자	양수자	
상호	토지건설(주)	그린건설산업(주)	
대표자	김대연	조현욱	
영업소재지	영등포구 양평동1가 165	포항서 북구 죽도2동 655-8	
도급한도액	200,000,000원	300,000,000원	

●관악구공고제1996-129호

전문건설업면허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를 인가하였

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6. 6. 25
 관악구청장

양도 인가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상호	대표자	소재지
1996. 6. 18	의장 94-서울-01-69 도장 94-서울-05-25	세방건설 (주)	황강재	관악구 봉 천동 1611 -30	원두건설 (주)	정인영	관악구 봉 천동 1611 -30

●강남구공고제1996-16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

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6. 6. 25
 강남구청장

건설업 양도인가 내역

인가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양도인가일	1996. 6. 13
업종 및 면허번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4-서울-10-253)

구분	양도자		양수자		
대표자	이강희, 이강호		조남홍, 강준규		
상호	강토건설(주)		용화건설(주)		
영업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65-6		송파구 가락동 17-4, 5		
도급한도액 (95년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0,00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0,000,000원		
인가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양도일자	1996. 6. 13				
업종및면허번호	철물공사업(82-11-236)				
구분	양도자		양수자		
대표자	조원국		허화영		
상호	선모엔지니어링(주)		용문산업(주)		
영업소재지	강남구 포이동 259-3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40-81		
도급한도액 (95년도)	철물공사업- ₩319,692,000원		철물공사업- ₩319,692,000원		
<p>◎강남구공고제1996-173호 주택건설업자영업정지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p>		<p>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6. 6. 25 강남구청장</p>			
가.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90-23-232	만세개발(주)	전수승	강남구 역삼동 831	영업정지 1월 96. 6. 24-96. 7. 23	사건입주

●강남구공고제1995-17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

연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6. 6. 25
강남구청장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1996 6.19	토공사업 83-서울-02-521 포장공사업 농부 16-12	호림건설 산업(주)	강남구 논현동 127	정말준	범주건설 (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1동 1204-13	김주인

●승파구공고제1996-133호
전문건설업상속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
설업면허를 상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6. 6. 25

승파구청장

가. 상속인가일월일: 1996년 6월 13일
나.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번호: 89-서울-10-34)
포장공사업
(면허번호: 89-서울-16-06)

다. 피상속인, 상속인의 주소와 주된 영
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설명:

○피상속인

- 상호: 충남기업
- 소재지: 서울특별시 승파구 오금
동-10-3
- 대표자: 조정화
- 대표자주민등록주소: 서울시 오금
동 92-11 나정 101호

○상속인

- 상호: 충남기업
- 소재지: 서울특별시 승파구 오금
동-10-3
- 대표자: 조정화
- 대표자주민등록주소: 서울시 승파
구 오금동 165 상아 6-1007

●승파구공고제1996-134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
설업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6. 6. 25

승파구청장

가. 양도인가일월일: 1996년 6월 13일
나.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번호: 91-서울-10-59)
상속수도상업면허
(면허번호: 서울-13-2)
다.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

지. 상호 및 성명

○양도자

- 상호 : 합자 경일건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45-2
- 대표자 : 노경산

○양수자

- 상호 : 영진건설(주)
- 소재지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347-10
- 대표자 : 장영규

●송파구공고제1996-13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
 설업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6. 6. 25

송 파 구 청 장

가. 양도인가연월일 : 1996년 6월 15일

나.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

도장공사업

(면허번호 : 92-서울-05-59)

철물공사업

(면허번호 : 95-서울-11-236)

다.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

지, 상호 및 성명

○양도자

- 상호 : 금화공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33-9
- 대표자 : 박남주

○양수자

- 상호 : (주)정환테크노피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74-5
- 대표자 : 김수만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1996-64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

한강구역 내에서 하천법 제25조제1항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선
 박의 운항)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6. 25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연월일	운항허가척수	운항구간	허가기간	운항목적	허가물 받은 자	
					성명	주소
1996. 6. 17	총 : 3척 모터보트 3척	반포대교~ 한남대교 앞 수면	1996. 6. 17~ 1996. 10. 31	유선업 경영 을 위한 선 박 운항	(주)세원해운 이성진 945 삼안빌딩 9층	대표이사 대처동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1996-65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

한강구역 내에서 하천법 제25조제1항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선

박의 운항)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6. 25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연월일	운항허가착수	운항구간	허가기간	운항목적	허가를 받은 자	
					성명	주소
1996. 6. 17	승선 2척 모터보트 2척	유선장 ~ 반포대교 ~ 거북선선착장 앞 수면	1996. 6. 17 ~ 1996. 12. 31	유선업 경영을 위한 선진 선박 운항	주 금경기획 박 운항	대표이사 구의동 광진구 구의동 547-8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1996-6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6. 25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연월일	위 치	자 목	점용면적 (㎡)	점용 목적	점용 기간	허가를 받은 자	
						성명	주소
96. 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6-3 한강	하천	760㎡	송전 첩담 기초 범면 유실 보강 공사	96. 6. 18 ~ 96. 7. 7	김대식 한전 영서전력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606

사업소공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공고

제1996-9호

도시공원시설(식당휴게소)관리위탁

도시공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탁하였기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6. 6. 25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시설(식당휴게소, 버스요관대소) 관리위탁내역

공원명	위 치	공원시설	구 조	시설내역 (㎡)		관리위탁 기간	위탁관리자	
				건 물	토 지		성 명	주소
서울대공원	394	식당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 철골	122.08		96. 7. 1 ~ 96. 12. 31	대한상어군경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교육청공고

●교육청공고제1996-68호

1996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공고

1996. 6. 25

서울특별시교육감

1996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

의회 제85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기 공고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세입				세출							
장별	과별	수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장별	과별	수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증	감					증	감		
국가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73,734,339	578,643,543		4,909,204	교육위원회		1,259,873	1,146,819	113,054			
	지방교육안비금	974,549,208	877,208,000	97,343,208		본청	교육행정비	1,629,711,423	1,592,559,182	37,152,241			
	교육환경개선교부금	57,858,249	0	57,858,249			교육사업비	11,912,385	10,130,293	1,782,092			
	국고지원금	9,577,641	2,167,069	7,410,572			학교비	38,429,220	27,018,970	11,410,250			
	계	1,615,719,437	1,458,016,612	162,612,029	4,909,204		사학지원비	218,214,887	191,446,885	26,768,002			
					시설비		125,348,186 (채5,000,000)	56,091,362 (채5,000,000)	69,256,824				
지방자치단체	법정현인출	571,183,000	441,457,000	129,726,000		계	2,024,116,101 (채5,000,000)	1,877,746,692 (채5,000,000)	146,369,409				
	비법정현인출	10,200,000	10,200,000			계							
	지원금	472,501	472,501			동부교육청	103,920,197 (채2,000,000)	50,446,592 (채2,000,000)	53,473,605				
	계	581,855,501	452,129,501	129,726,000		서부교육청	55,201,922 (채1,000,000)	40,202,592 (채1,000,000)	14,999,330				
					남부교육청	41,205,667	24,583,299	16,622,368					

제 1979 호

나

표

1996. 6. 25

39-35

구분		세입				세출			
장별	관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증	감			증	감
지방방위 자치회 단체 단부 세담 교수 육입 회	재산수입	4,757,035	4,757,035			북부교육청	60,219,838	57,393,455	11,826,383
	입학금 및 수업료	267,532,579	267,532,579			중부교육청	41,113,951 (채1,000,000)	31,150,134 (채1,000,000)	9,963,817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749,681	4,616,262	133,419		강동교육청	65,817,271 (채4,000,000)	53,412,427 (채4,000,000)	12,404,844
	감수입	21,954,067	11,740,784	10,213,283		강서교육청	45,831,742	31,926,750	13,927,992
	이월금	123,968,606	30,000,002	93,968,604		강남교육청	35,037,957	24,468,695	10,569,262
	지방보육채	4	4			동작교육청	25,920,156 (채2,000,000)	25,762,983 (채2,000,000)	10,157,173
	계	422,961,972	318,646,666	104,315,306		성동교육청	22,799,266	0	22,799,266
주민부담 수입	48,505	48,505			성북교육청	68,526,628	0	68,526,628	
					예비비	10,600,846	10,600,846		
합 계	2,620,585,415	2,228,841,284	396,653,335	4,909,204	합 계	2,620,585,415 (채15,000,000)	2,228,841,284 (채15,000,000)	391,744,131	
								391,744,131	

제1979호

나

바

1986.6.25

공 문 시 행

강동수도사업소
(483-1779)

문서번호 총부 43550-958

시행일자 1996. 6. 25

수 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제 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 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음 물품은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하니 희망기관(부서)에서는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전환 요청하길 바라며
2. 위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은 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습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

관리전환 물품명세서

문서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태	불용결정 사유
4320-030	다단물류트 범 프	다단물류트4단 양정 : 50m 구경 : 50m/m 용량 : 5.5kW	대	1	295,000	91	중고	용량중설교체
6120-004	변압기	유압 자냉식 용량 : 40kVA	대	1	2,500,000	91	중고	용량중설교체

은평구
(350-1341)

문서번호 제부 43550-1514

시행일자 1996. 6. 25

수 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제 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음 물품

- 은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하니 희망기간(부서)에서는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전환 요청 바라며
2. 위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은 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은평구청장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태	불용결정 사유
	자동인종기	PC-7	대	1	1,800,000	92. 2. 18	양호	요금계기복합인종기사용으로 미사용
4120-001	냉방기	7.5R/T SD-8HA	"	1	2,496,670	88. 1. 20	"	신속 청사로 이전(미사용)
4520-055	온풍난방기	H 3550	"	1	565,190	86. 1. 20	"	"

마 포 구 (330 2340)
 문서번호 제우 43160-1488
 시행일자 1996. 6. 25
 수 신 서울특별시와 각 사업소, 서구 1~25
 제 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 구에서 불용대상 물품으로 관리 중인 동 행정차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6조,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회하오니 회망부서(기관)에서는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구로 요청하시기 바라며(단, 회망부서는 사전 전화 요청 바람).
 2. 위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시 적당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마 포 구 청 장

가. 관리전환 소요조회 물품현황

(단위: 원)

장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취득가격 (대당)	취득연월일	상 태
2320-009	소 형 화물차	와이드봉고 더블캡	대	12	6,219,000	89.7.28 -89.11.3	중고품

인사발령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파견
 발령 제343호(1996. 6. 14)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지방건축
 주사보 김일중 내무부 파견근무를 명함
 (96. 6. 17~97. 6. 16)
 서울특별시장

기업행정직9급 공무원 연직
 발령 제 344호(1996. 6. 14)
 상수도사업본부(북부수도사업소) 지방기
 업행정서기보 김현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5급 기술직공무원 징계
 발령 제345호(1996. 6. 15)

태기물식설과 지방토목사무관 이준록 지
 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2호의 규정
 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서울특별시장

기능직 공무원 연직
 발령 제346호(1996. 6. 15)
 동부병원 지방사무보조원(행보) 10등급
 황준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지방2·3급 공무원 전보
 발령 제347호(1996. 6. 17)
 교통기획관 지방이사관 조광권 공보관에
 보함
 강동구 부구청장 지방이사관 윤우길 문
 화국장에 보함
 문화국장 지방부이사관 김우석 교통기획
 관에 보함
 서울특별시장

기능직 공무원 직권면직

발령 제348호(1996. 6. 3)

총무과 지방방호원 10등급 장기남 지방
공무원법 제6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파견(파견지 변경)

발령 제349호(1996. 6. 18)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주사 한동근 당
산철교 상부교체공사감리회사(→가양대교
건설공사 감리회사)로 파견근무 변경을 명
함 1996. 7. 1~1996. 12. 25

서울특별시장

6급이하 기술직및기능직공무원

직위해제처분(변경)

발령 제350호(1996. 6. 18)

민방공경보통제소 지방통신주사 이재웅
1996. 5. 23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로 변경
처분함

민방공경보통제소 지방통신원(10등급)

김현동 1996. 5. 23자 지방공무원법 제65
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로 변경처분함

민방공경보통제소 지방통신원(10등급)

김성근 1996. 5. 23자 지방공무원법 제65
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로 변경처분함

서울특별시장

정무연사 발령 통지

발령 제351호

서울특별시 공보관 지방부이사관 정규희

총무과 부이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강
동구 부구청장에 보함

1996. 6. 17 대통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구청장 이사관 윤
우길(尹佑吉)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
을 명함

1996. 6. 17 대통령

지방이사관에 임함

1996. 6. 17

서울특별시장

5급 기술직 공무원 전출

발령 제352호(1996. 6. 19)

서울특별시(내무국) 지방건축사무관 박
용성 강북구전출

서울특별시장

기능직 공무원 정규임용

발령 제353호(1996. 6. 20)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안전원 10등급시
보 박일용 지방안전원 10등급에 임함

총무과 지방위생원(사역) 10등급시보 김
기선 지방위생원(사역) 10등급에 임함

소방본부 지방위생원(사역) 10등급시보

김경순 지방위생원(사역) 10등급에 임함

소방본부 지방위생원(사역) 10등급시보

이정임 지방위생원(사역) 10등급에 임함

소방본부 지방위생원(사역) 10등급시보

윤미화 지방위생원(사역) 10등급에 임함

여성복지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0등

급시보 이순복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0등

급에 임함

환경계획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0등

급시보 최동순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0등

급에 임함

서울특별시장